(15-019) ○○○○공항 ○○○○터미널 이동식크레인 붐대 파단

공사명	○○○○공항 ○○○○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			
사고일시	2015년 11월 10일(화) 10:15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인천시 중구 운서동	사고 종류	파단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사망 1명, 경상 2명	
장비 손실	이동식 크레인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🔾),	해당없음()

Ⅱ 공사개요

- o 공사종류: 기타 o 연면적: 384.336㎡
- o 규모: 지하 1층/지상 5층(최고높이 40m), 주기둥 37기

② 사고경위

사고개요

o 제2여객터미널 지붕트러스(철골) 설치를 위하여 이동식크레인(550톤)으로 트러스(43톤)를 인상하여 조립하던 중, 크레인 붐대가 파단되어 인근근로자 (3명)중 1명 사망, 2명 경상.

③ 사고워인

- o 크레인이 트러스를 인상하여 조립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위치이동을 위해 움직이던 중 동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붐대 파단.
- o 크레인 붐대가 사전에 손상 또는 균열발생으로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 되었을 수 있음.(국내도입 후 8년경과, 현장 투입전 장비검사 실시)
- o 지반침하에 의한 붐대 파단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.

o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(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)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재발방지 대책

- o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 최대의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실시할 때에 시험하중에 맞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o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(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)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o 고정된 구조물의 제거 또는 철거 작업 등에 이동식 크레인 사용 금지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 전경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